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2. 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월 2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2월 4일

라. 상정일자 :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4년 2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나. 주요내용

- 1)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와 이해관계의 의견 수렴 규정
- 2)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지원신청과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내용 등
-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관련 규정
- 4) 활동지원 급여
- 5)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 6) 자립생활 체험홈 및 주거생활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과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활동지원 급여, 주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그 동안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거나 과잉보호, 시설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등 보호위주의 지원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보호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 사료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등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 단계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9 호
----------	---------

제출연월일 : 2014.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제정목적 및 사용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

나.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제4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관련 구청장의 책무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다. 지원 신청 및 지원(안 제5조, 제6조)

-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신청과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내용, 한도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 업무위탁, 예산지원, 조직 및 운영, 사업내용(안 제7조 ~ 제9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의 소집(안 제10조 ~ 제12조)
- 예산·결산, 지도·감독, 제재조치, 보조금의 반환(안 제13조 ~ 16조)

마. 활동지원급여(안 제17조 ~ 제19조)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지원급여의 구비 추가 지원

바. 인권 및 자립 생활 교육(안 제20조)

-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과 종사자 교육

사. 자립생활 체험홈 및 주거생활 지원(안 제21조 , 제22조)

-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 지원
-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1.28.~12.18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7. “체험홈”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활동지원 급여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주거환경 개선 지원

5. 학습권 보장 지원
6.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7. 구직 활동, 취업 관련 정보 지원, 직업재활시설 설립·지원
8.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사정, 상담, 자원연계, 사후관리 등)
11.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12.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 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을 위한 기능 및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사업

6. 장애인 보조기 수리 사업
7.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8.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9.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1. 이용자 대표
2. 여성 장애인
3.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4.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6.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소집방법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보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4.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관련법령이나 명령, 행정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4장 활동지원급여

제17조(급여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제18조(제공인력)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 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 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활동지원인력은 소속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4대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구비 추가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및 주거지원

제20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주거 생활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